

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의 건

□ 근거법규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97조

□ 공시사항

- 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: 최대주주
- ② 단기매매차익 금액 : 9,475,419원
- ③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: 2024년 3월 28일
- ④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: 2024년 4월 15일 전까지 청구예정
- ⑤ 당사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 포함)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주주는 당사를 대위(代位)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.